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. 9. 29 선고 2021가단100685 판결 [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

담당변호사 곽훈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석

변 론 종 결 2021. 9. 8.

판 결 선 고 2021. 9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는 2014. 10. 15.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위치한 건물 중 D호(이하 ‘이 사건 호실’이라 한다)를 보증금 40,000,000원, 전대차기간 2014. 11. 15.부터 2015. 11. 14.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호실의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, 이에 따라 원고 역시 전차인으로서 2020. 12. 31. 임대인에게 위 호실을 인도한 사실,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남아 있는 보증금이 40,000,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나.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전대인인 원고는 전차인인 피고에게 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. 1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병호